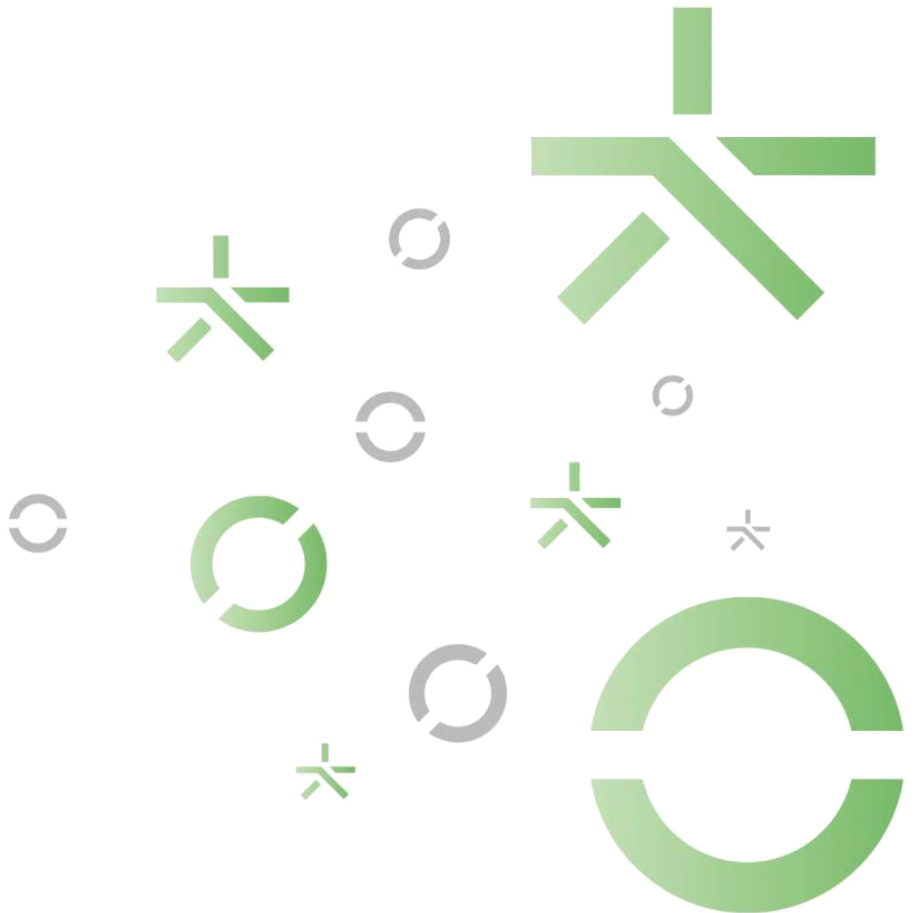


인천시 재정수요를 고려한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연구 : 해양쓰레기 처리비용을 중심으로

박찬운



연구책임

박찬운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위원

032-260-2607

chanwoon@ii.re.kr

열람방법

인천광역시 행정자료실

인천연구원 자료실, 홈페이지(www.ii.re.kr)

이 보고서는 인천연구원이 수행한 연구보고서를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 서론

1)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보통교부세의 산정 및 운영과정에서 한계점을 살펴본 후 인천시 측면에서 보통교부세 산정이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재정수요 반영의 개선점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함
 - 구체적으로는 현행 보통교부세 제도 운영 방식과 문제점을 기준재정수요 중심으로 거시·미시적으로 분석함
 - 인천시 측면에서 불합리하고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인을 포착, 합리적으로 제도개선 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여 제언함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연구의 범위
 - 대상적 범위
 - 보통교부세제도의 의의 및 기능
 - 보통교부세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인천광역시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방안 및 효과 검토
 - 정책제언
 - 공간적 범위: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하되 특광역시로 논의 확장
 - 시간적 범위: 최근 5년 간을 중심으로 논의
- 연구의 방법

- 관련 문헌고찰
- 자문회의 및 전문가 대상 면담조사(FGI)
- 기초통계분석 및 계량 분석

2. 보통교부세제도에 대한 논의

1) 지방교부세의 의의와 기능

-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1조에 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며,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교부되고 있음
 - 이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보전하고 (재원보전기능),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는 기능(재정격차 시정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로써, 보조금과는 달리 그 사용에 아무런 조건이 첨부되지 않는 일반적인 재정지원금임
 -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단순하게 지원하는 교부금이 아니라 본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중앙정부와 공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재원 이라고 볼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게 교부되는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용도를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용도를 설정하는 재원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지정하지 않아야 함

2) 지방교부세의 유형과 재원

- 지방교부세의 유형에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그리고 소방안전 교부세가 있음
 - 2023년 지방교부세 총액인 75.29조 원의 구체적인 유형을 보면 보통교부세 66.64조 원 (88.5%), 특별교부세 2.06조 원(2.7%), 부동산교부세 5.71조 원(7.6%), 소방안전교부세 0.87조 원(1.2%)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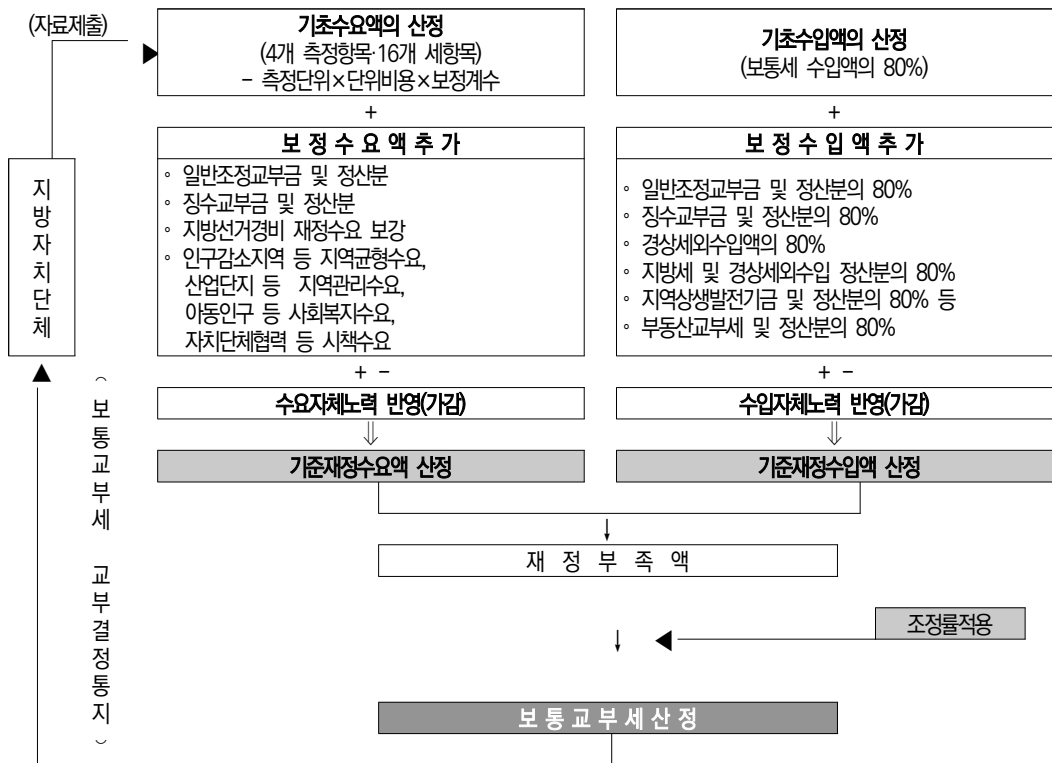
[표 1] 지방교부세의 구조와 자원(2021년-2023년 현재)

구분	2021	2022	2023	비고	
총계	51.75조원	65.06조원	75.29조원		
보통교부세	44.54조원	55.10조원	66.64조원	97%	내국세의 19.24%
특별교부세	1.38조원	1.70조원	2.06조원	3%	
부동산교부세	4.94조원	7.38조원	5.71조원	종합부동산세 100%	
소방안전교부세	0.90조원	0.86조원	0.87조원	담배 개별소비세액 45%	

3) 지방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 산정방법

-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재정부족단체’라 하며, 재정부족단체에 대하여 보통교부세를 교부하는 것임
 -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초과단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불교부단체’라 부르고 있으며, 여기에는 보통교부세를 교부하지 않음

[그림 1] 지방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 산정방법



3. 인천광역시 지역 특성 및 재정현황 분석

1) 지역 특성 분석

- 인천광역시의 지역 특성을 인구 규모, 합계출산율, 고령인구, 등록 외국인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등록장애인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등에 대해 분석하였음
 - 인구규모는 특광역시 중 3위, 인구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합계출산율은 특광역시 중 6위에 해당하는 0.7명의 수준, 고령인구비율은 6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등록외국인수는 2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는 3위, 등록장애인수는 3위, 경제활동을 대변하는 사업체수는 3위(도매 및 소매업이 가장 많은 비중 차지, 종사자수는 제조업이 가장 많고 다음이 도매 및 소매업), 경제활동인구는 1위, 고용률은 2위의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지역적 특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인천광역시는 대체적으로 인구규모와 유사한 위상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특광역시 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2) 재정현황 및 재정력 분석

- 인천광역시의 세입예산은 2023년 15조 4천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세입예산 중에서는 지방세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보조금이고 지방교부세는 일반회계 예산의 8.5%의 수준이며, 분야별 세출예산규모를 보면 사회복지비가 가장 높은 42.66%이고 다음이 일반공공행정비의 12.72%임
 - 인천광역시의 재정자립도는 50.3%로 특광역시 중 3위, 재정자주도는 59.2%로 특광역시 중 6위, 세입예산에서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특광역시 중 6위의 수준으로 나타남
 - 재정현황과 재정력에 대한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인천광역시는 세입예산에서는 지방교부세의 확대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세출예산에서는 사회복지비의 증가수준을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재정력에서는 지방교부세 교부액의 상향조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도출할 수 있었음

4. 인천광역시 보통교부세 교부현황 분석

1) 보통교부세 교부현황 및 추이분석

- 인천광역시의 보통교부세 규모를 보면 2019년 5,960억 원에서 2023년 1조 499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연평균 15.41% 증가한 수준임
 - 특광역시의 보통교부세 평균증가율을 보면 인천광역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다만 보통교부세의 규모는 인천광역시가 다른 광역시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인천광역시의 주민 1인당 보통교부세는 2019년 201,565원에서 2023년 352,465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연평균 15.20%가 증가한 수준임
 - 주민 1인당 보통교부세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울산광역시가 29.37%로 가장 높은 수준이고 그다음은 인천광역시 그리고 부산광역시(14.98%)의 순서임
- 주민 1인당 보통교부세 규모는 인천광역시가 다른 특광역시와 비교할 때 매우 작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인천광역시의 주민 1인당 5년 평균 보통교부세 규모는 272,159원이며, 이는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5개 지역의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음

2) 기준재정 수요 및 수입 분석

(1) 기준재정수요 대비 수입분석

-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재정부족액은 다음과 같음
 - 재정부족액이 가장 큰 특광역시는 5년 평균을 기준으로 할 때 부산광역시의 1,551,366백만 원이고 다음은 대구광역시의 1,378,875백만 원임
 - 인천광역시는 5년 평균을 기준으로 할 때 983,952백만 원이고 이는 특광역시 중 5위에 해당됨

(2) 기준재정수요액 분석

- 인천광역시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5년 평균을 기준으로 하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다음으로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특이한 점은 연평균 증가율을 기준으로 할 때 인천광역시의 기준재정수요액 증가율이 11.0%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것임

(3) 기준재정수입액 분석

- 인천광역시의 기준재정수입액을 보면 2020년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5년 평균을 기준으로 하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다음으로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인천광역시의 기준재정수입액 증가율은 9.93%로 4위의 수준을 보이고 있음

3) 시사점

- 인천광역시의 보통교부세 교부현황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음
 - 인천광역시는 보통교부세의 교부액을 기준으로 하면 높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증가율은 매우 높은 수준임
 -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구성요소별로 분해하여 살펴본 결과 보정수요를 활용하여 보통교부세를 증가시키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짐

5. 인천광역시 보통교부세 확보방안

1)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비용의 보정수요 반영 필요성

-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비용을 보정하는 대안을 강구하였음
 - 해양쓰레기는 선박사고 유발, 어업생산성 저감, 생태계 파괴, 식품안전 및 사람의 건강 위협, 관광자원 및 경관 훼손, 국가간 갈등 유발 등 다양한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수거 및 처리하여야 함
 - 중앙정부에서는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예방 및 환경친화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
 - 해양쓰레기 관리주체별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해양수산부 : 해양쓰레기 정책 총괄, 해양쓰레기 유입 예방, 수거, 관리, 협력
 - 환경부 : 하천 및 하구쓰레기 총괄, 해양 유입예방, 수거, 관리, 협력
 - 지방자치단체 : 해당 관할 쓰레기 사업 추진, 해양쓰레기 수거, 협력
 - 그밖에 국토부, 농림부, 산림청 등

재원	사업구분	주요 내용
해양수산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항선(해양환경관리공단)-부유쓰레기 수거사업 • 연안대청소 행사쓰레기 수거사업 • 불법어구철거사업 • 해양폐기물정화사업 • 해양폐기물 집하장 설치 지원
환경부 시도 부담금	하천·하구 쓰레기 처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구 바다쓰레기 정화사업, 해안쓰레기 정화사업, 부유쓰레기수거·처리사업 등 보조 • 육상기인 해안쓰레기 수거(접근 해안지역 : 공공근로 / 접근곤란해안지역 : 용역) • 육상 집하장 설치 지원
	환경정화선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환경측정 지원 • 부유쓰레기 수거 • 해안쓰레기 수거 지원
인천광역시 자체사업	인천앞바다 쓰레기 수거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강분류 중 서울특별시 구간 쓰레기 처리사업 비용 부담금(한강분류분담금)(서울 89.2%, 경기 8.3%, 인천 2.5%)
	조업 중 인양 쓰레기수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화군, 옹진군 등록조업 어선 대상으로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

- 인천광역시는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높은 수준임
 - 전남 224억 원, 경남 178억 원, 충남 104억 원이며, 인천은 99억 원이나 인천광역시는 시도비 집행액이 가장 많은 64억 원의 수준을 보임
 - ※ '22년 인천 시비 6,364백만 원 구성(순수시비 2,107, 한강수계기금 3,025, 서울경기 분담금 1,232)

[표 2] 해양쓰레기 지역별 수거 예산집행액(2022년)

(단위 : 백만 원)

구분	수거량 (ton)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부산	5,185	4,658	2,034	1,320	1,304	4,530	128
인천	5,190	9,875	3,051	6,364	460	9,875	0
울산	3,094	1,335	503	506	326	1,241	94
경기	2,020	3,088	1,148	927	1,014	3,043	45
강원	4,146	3,717	1,483	658	1,576	3,329	388
충남	12,823	12,639	4,773	2,986	4,880	10,403	2,236
전북	5,775	6,287	2,390	1,006	2,891	5,832	455
전남	34,671	27,431	9,619	4,487	13,325	22,362	5,069
경북	12,895	4,516	1,603	924	1,989	3,850	666
경남	8,645	18,454	7,822	3,869	6,763	17,765	689
제주	17,017	8,192	3,176	3,288	1,729	7,310	883
해양환경공단	4,067	16,331	16,331	0	0	16,331	0
한국어촌어항공단	5,299	12,503	12,503	0	0	12,503	0
해양수산부	4,568	9,523	9,523	0	0	9,523	0
한국수산회	640	2,477	2,477	0	0	2,477	0
합계	126,035	141,025	78,436	26,334	36,255	130,374	10,652

자료(출처) : 해양환경정보포털

[표 3] 인천광역시 해양쓰레기 연도별 수거 예산액(2017년 ~ 2022년)

(단위 : 백만 원, %)

구분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2017	7,654	2,154	5,500	-
2018	7,550	2,050	5,500	-
2019	8,340	2,840	5,500	-
2020	8,536	2,596	5,720	220
2021	8,653	2,732	5,585	336
2022	9,875	3,051	6,364	460

자료(출처) : 인천광역시 내부 자료

2)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비용 보정수요 반영 방안

- 인천광역시가 보통교부세를 보다 많이 받기 위해서는 해양쓰레기 수거와 관련한 내용을 보정수요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제1안: 해양쓰레기 발생량 기준으로 수요를 보정하는 방안
 - 제2안: 해양쓰레기 수거량 기준으로 수요를 보정하는 방안

(1) 해양쓰레기 발생량을 기준으로 수요를 보정하는 방안

① 보정방안

- 해양쓰레기 발생량을 기준으로 수요를 보정하는 것은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 수립의 근거가 되는 5년 단위의 발생량 조사 통계를 사용할 수 있음
 - 그러나 부유쓰레기 및 침적쓰레기는 연안(해안가)이 아니고 해상 및 해저의 쓰레기로 시군구별 통계 생성이 용이하지 않음
 - 또한 부유쓰레기 및 침적쓰레기의 수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아님
-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해양쓰레기 발생량의 대응변수로 해안선길이를 사용하는 대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현재 60개 연안에서의 해안쓰레기 모니터링은 미터(m) 단위의 20개 구간 중 랜덤 4개 구간을 선정하여 조사하기 때문에 시군구별 해안쓰레기 발생량은 해안선길기와 비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해양쓰레기 발생량 기준의 보정수요 측정을 ‘해안선 길이’로 대응하여 측정할 경우 현재 지역균형수요에는 해안지역의 측정항목 변수가 ‘해안선 길이’이므로 이의 가중치를 상향 조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음
 - 해안선 길이는 해안지역이라는 지형적 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안쓰레기 등을 처리하여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하고자 보정수요로 반영되었음
 - 2023년부터는 변수(통계)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국한됨에 따라 그동안의 회귀식 적용에 한계가 있어 예산편성액 적용방식으로 변경됨

- 현재 해안선 길이로 수요액이 보정되는 지방자치단체 수는 광역시 3단체, 시 25단체, 군 21단체임
 - 광역시(자치구분 합산): 부산, 인천, 울산
 - 시: 평택, 안산, 시흥, 김포, 화성, 강릉, 동해, 속초, 삼척, 보령, 아산, 서산, 당진, 군산, 김제, 목포, 여수, 순천, 광양, 포항, 경주, 창원, 통영, 사천, 거제
 - 군: 강화, 옹진, 고성, 양양, 청양, 홍성, 태안, 고창, 부안, 고흥, 보성,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완도, 진도, 신안
- 지방자치단체의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이 증가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현행의 가중치 50%를 100%로 상향조정하여 실제 소요되는 재정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관련 시군구의 예산은 국고보조금 외에 시도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산정 수요액의 30%는 시도에 배분하여 시도의 재정수요를 보정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산정공식

$\bullet \text{ 해안선길이} \times \text{동종지방자치단체별 해안선길이 1m당 해안선 관련 일반재원} \times \mathbf{50\%}$
--

- 개선 산정공식

$\bullet \text{ 해안선길이} \times \text{동종지방자치단체별 해안선길이 1m당 해안선 관련 일반재원} \times \mathbf{100\%}$ <p style="text-align: center;">※ 수요산정액의 30%는 시도, 70%는 시군구에 반영함</p>
--

② 보정수요액 증가효과

- 산정공식의 가중치를 50%에서 100%로 상향할 경우 2023년 기준으로 인천광역시는 본청, 강화군 및 옹진군을 합하여 총 2,453백만 원의 수요액 증가 효과가 있음

[표 4] 단체별 보정수요액 증가 효과

(단위: m, 백만 원)

	해안선길이	산정 수요액			비고	
		현행 (가중치 50%)	개선 (가중치 100%)	증가액		
서울	-	-	-	-	자치구분 본청으로 합산산정	
부산	본청	343,180	894	1,788		894
	기장	65,615	139	278		139
	계	408,795	1,123	2,246		1,123
대구	-	-	-	-		
인천	본청	230,768	602	1,204		602
	강화	270,380	574	1,148		574
	옹진	576,055	1,277	2,554		1,277
	계	1,077,203	2,453	4,906		2,453
광주	-	-	-	-		
대전	-	-	-	-		
울산	본청	96,345	251	502		251
	울주	53,891	114	228		114
	계	150,236	365	730	365	
경기	268,024	1,084	2,168	1,084	산정액 100% 시,군 수용액으로 반영	
강원	438,862	1,459	2,918	1,459		
충북	-	-	-	-		
충남	1,213,599	3,598	7,196	3,598		
전북	549,232	1,723	3,446	1,723		
전남	6,872,944	16,933	33,866	16,933		
경북	567,709	1,711	3,422	1,711		
경남	2,477,894	8,739	17,478	8,739		
제주	-	-	-	-	해당없음	
합계	14,024,498	39,188	78,376	39,188		

(2) 해양쓰레기 수거량 기준으로 수요를 보정하는 방안

① 보정방안

- ‘해양쓰레기 수거량’ 기준의 보정수요 측정은 ‘해양쓰레기 수거량’과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의 일반재원 예산’으로 수요액을 산정할 수 있음
-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해양환경공단에서 전년도 기준으로 제공하는 지역별(시군구별) 해양쓰레기 수거량을 사용할 수 있음
-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관련 일반재원 예산은 보통교부세 산정 당해연도의 당초예산을 사용할 수 있음

○ 해양쓰레기 수거량 기준의 지역균형수요 측정 항목 추가 및 보정수요액 산정 공식

- 해양쓰레기 수거량을 지역균형수요 측정항목으로 추가
-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관련 시군구의 예산은 국고보조금 외에 시도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산정 수요액의 30%는 시도에 배분하여 시도의 재정수요를 보정할 필요가 있음

• 해양쓰레기 수거량 × 동종지방자치단체별 해양쓰레기 1톤당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관련 일반재원 × 100%
※ 수요산정액의 30%는 시도, 70%는 시군구에 반영함

② 보정수요액 증가효과

○ 해양쓰레기 수거량 기준으로 수요를 보정할 경우 인천광역시 전체적으로 3,694백만 원의 수요액 증가가 나타나고, 이 중 본청이 1,570백만 원, 강화군 742백만 원, 옹진군 1,381백만 원의 수요 증가가 나타남

- 수거량: 해양환경공단의 지역별(시군구) 해양쓰레기 수거량 공개 자료 활용
- 일반재원 예산: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시도비 및 시군구비
- 동종단체 1인당 해양쓰레기 1톤당 일반재원 예산은 특·광역시(부산, 울산)의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예산을 본 연구에서 획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인천(자치구)의 관련 예산을 동종단체 1톤당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관련 일반재원으로 사용하고, 다른 군들의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예산 역시 본 연구에서 획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강화군·옹진군 예산의 평균값을 동종단체 1톤당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관련 일반재원으로 사용하되, 강화군과 옹진군의 예산이 다른 군에 비해 많음을 고려하여 그 평균값의 50%를 사용함
- 이러한 가정하에 산정된 수요액은 본청분(자치구 합산분)을 구하고, 강화군과 옹진군의 수요산정액은 본청과 군에 30% 대 70%로 안분함

[표 5] 단체별 보정수요액 증가 효과

구분	수거량 ¹⁾ (톤) (A)	일반재원 예산 ²⁾ (천원) (B)	동종단체 1톤당 일반재원 (원) (C=B/A)	수요액(백만원)		
				계 (D=A×C)	본청분 (30%)	시군구분 (70%)
본청 (자치구 합산)	1,475	660,290 ³⁾	447,654	660	660	-
강화군	1,418	2,092,286	1,196,036	1,060	318	742
옹진군	2,640	3,998,470	1,196,036	1,973	592	1,381
계	5,533	6,751,046	-	3,694	1,570	2,124

주1: 수거량은 2022년도 기준임

주2: 일반재원 예산은 구군예산으로 시 보조금과 구군비이며, 2023년 당초예산 기준임

주3: 인천광역시 본청 자체 집행 예산은 제외됨

주4: 연수구의 경우 수거량 118톤이 포함되었으나 예산은 202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제외됨

3) 정책건의

- 본 연구에서 제안한 2개의 대안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수혜하는 범위에 차이가 있음
 - 해양쓰레기 발생량을 기준으로 하면 본청과 강화군-옹진군을 종합할 때 2.453백만 원에서 4,906백만 원으로 2,453백만 원이 증가함
 - 해양쓰레기 수거량을 기준으로 하면 3,694백만 원이 증가함
 - 본청이 1,570백만 원, 강화군-옹진군이 2,124백만 원으로 나타남
- 인천광역시가 수혜하는 범위를 기준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정책대안을 선택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객관적인 자료의 활용,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인천광역시는 보통교부세의 교부 규모가 크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짐